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광을 향유할 권리 명시 등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40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영 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관광을 향유할 권리 명시 등	2
※ 참고자료	10
□ 열린관광 환경조성 및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개요 ..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2026. 3. 9.

다. 회 부 일: 2026.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제2조, 제5조).

Ⅲ. 검토의견

□ 관광을 향유할 권리 명시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② 정부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관광 향유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각각 부여하며, ③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광진흥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조의2, 제2조 및 제5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조(<u>정부</u>의 시책) (생략)	<u>제1조의2(국민의 권리)</u>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u>정부</u> 등의 시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5조(법제상의 조치) <u>국가</u>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관광 향유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부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법제상의 조치)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는----- ----- ----- -----.

다. 검토사항

세계관광기구(UNWTO: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1999년 채택한 ‘세계관광윤리강령(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에서 ‘국제사회는 가족, 청소년, 학생,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관광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¹⁾,

1) Article 7 : Right to tourism

- (1) The prospect of direct and personal access to the discovery and enjoyment of the planet's resources constitutes a right equally open to all the world's inhabitants; the increasingly extensive participation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urism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best possible expressions of the sustained growth of free time, and obstacles should not be placed in its way;
- (2) The universal right to tourism must be regarded as the corollary of the right to rest and

2005년 세계관광총회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 지침을 채택하면서 장애물 없는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시설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²⁾.

이후 2016년에는 ‘모두를 위한 관광: 보편적 접근성 증진(Tourism for All - Promoting Universal Accessibility)’을 세계 관광의 날 행사의 주제로 채택하여 기존의 장애인 관광 증진 개념에서 더욱 발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보편적 관광향유권의 보장을 강조하였음³⁾.

또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⁴⁾ 총회에서는 관광할 권리는 ‘인간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기본적 권리이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4조 거주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guaranteed by Article 24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d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 Social tourism, and in particular associative tourism, which facilitates widespread access to leisure, travel and holiday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support of the public authorities;

(4) **Family, youth, student and senior tourism and touris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ncouraged and facilitated;**

2) 시설지침은 모든 관광시설에 요구되는 기초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광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윤혜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위한 장애인 관광의 실태조사 및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3.11.9., pp. 58~60)

3) 임지은, “모두를 위한 관광과 관광 법규의 제고: 보편적 접근성 증진의 개념을 중심으로”, 2023, pp. 262~263

4) 2024년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로 명칭을 변경함

이전의 자유 등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⁵⁾.

국내에서도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⁶⁾,

「관광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⁷⁾.

5) 김동현·오훈성, “관광권리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2022-20, pp. 99~109

6)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관광지의 주차장, 이용·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시설 등을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와 숙박·식음료·쇼핑 등 편의시설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연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성 강화 사업’도 아울러 추진 중임⁸⁾.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짐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균등한 관광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접근가능성 제고를 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무장애 관광 등 관련 관광정책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⁹⁾.

참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별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입법례로 문화권, 스포츠권, 주거권, 이동권 등이 있음.

[유사 입법례]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스포츠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8)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및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개요는 [참고자료] 참조

9)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년)은 여행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누구나 누리는 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관광지’의 지속 확대,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관광약자 여행연결망 구축,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국민들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명문화하여 무장애 관광 등 유관 정책의 실행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광향유권의 신설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임.

다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2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도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안 제1조의2(국민의 권리)가 신설될 경우 관광 향유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당연히 의제되는 만큼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하며, ③ 안 제5조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6조¹⁰⁾에서 국가의 관광 진흥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과 내용 및 기능상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10)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 열린관광 환경조성 및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개요

연도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4년	13,181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누구나 편리한 여행환경 조성 - 열린관광지 조성 20개소 조성(누적 162개소) - 무장애 관광연계성 강화 2개 권역 조성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2,248명) - 장애인 여행 지원(563명) - 투어케어 전문인력 양성(510명) - 휠체어 탑승가능한 차량 3대 도입
'25년	11,158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열린관광지 조성 20개소 조성(누적 182개소) - 무장애 관광연계성 강화 2개 권역 조성 -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5,601건) - 장애인 여행 지원(490명) - 투어케어 전문인력 양성(265명) - 무장애 전문여행사 육성 및 상품개발 지원(50건 / 우수상품 20건)
'26년	14,536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열린관광지 조성 30개소 조성 - 무장애 관광연계성 강화 3개 권역 조성 -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이용·편의시설 조사) - 장애인 여행 지원 및 열린여행 주간 추진 - 투어케어 전문인력 양성 - 무장애 전문여행사 육성 및 상품개발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